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8-163
----------	-------

제출년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인구유입 및 출산율 증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
-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 방법 및 대상(안 제3조~제4조)
- 지원 금액 및 절차(안 제5조~제8조)
- 지원 시기, 위탁, 환수 및 지급중지(안 제9조~제11조)

조례제정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3

사전예고(결과) : 붙임4

- 입법예고 : 2019. 4. 19. ~ 5. 9.(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있음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5

< 불임 1 >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등록금"은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4. "직접부담 등록금"이란 대상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제5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반값등록금"이란 제3호에 따른 직접부담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반값등록금의 지원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반값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①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 학생으로 한다.

② 반값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자녀가정 학생, 장애인 학생,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반값등록금은 등록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이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원횟수는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8회로 한다.

④ 학사과정 졸업 후(본 조례를 통해 지원받지 않은 졸업생을 포함한다) 동급 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신청인) 반값등록금을 지원 받으려는 대상 학생 또는 그 대상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4.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제5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병원 입원, 장기 여행 등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해당 연도 11월 30일로 한다.

③ 신청인은 반값등록금 신청일 이후 지급일까지 주소, 법정대리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절차)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가 접수 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해당 학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값등록금 지원검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반값등록금 지원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금액을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시기) 대학생 학자금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업무 위탁) 시장은 반값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업을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반값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반값등록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지원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제5조에 따라 산정된 반값등록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교육청소년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박 양 복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육지원팀장 임 준 흥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	(남, 여)
학교명		전공			
주소					
건강보험	① 지역건강보험() ② 직장건강보험 / 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				

학자금 지급 통장(보호자 및 대상자의 개인통장)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신청인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직장명	비고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의 건강보험공단 자격조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 재학 확인				
	② 수집 · 이용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학생 가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직업, 직장명)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학자금 지원 기간(학교 재학 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안산시				
	※ 동의 거부 시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 후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 (제7조제1항 관련)

신청인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직장명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직장주소 (직장명)				
	학자금 (수업료, 입학금) 지원여부	여 부	지원액 원	※아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 -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기입 - 지원 금액이 등록금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 기재	
학 生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교		학년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음(부분지급)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사업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안산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 직장 재직 시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검토서 (제8조제2항 관련)

< 불임 3 >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 단계별 추진(4단계)

나. 추계결과 : 5년간 총 (시비)소요예산

○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 연차별 단계별 추진시 추계

(2018.12.31. 학생수에 의한 추계(안산시 인구감소율 1.5% 적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상자(명)	60,576	3,945	4,851	13,287	19,392	19,101
사업비	95,398	2,880 (해당금액 $\frac{1}{2}$)	7,083	21,923	31,996	31,516
연차별 추진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대상		국민기초+장애인 +다자녀	1단계+차상 위+한부모	1, 2단계+ 소득6분위	전체학생	전체학생

* 2019년 사업비는 1단계 5,760백만원이나, 하반기 사업시행으로 $\frac{1}{2}$ 적용

▷ 2019년, 2020년, 2021년 대상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시행시 추계

▷ 2022년 ~ 2023년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안산시 인구현황 자료에 의한 추계

▷ 2019년 ~ 2020년 지원사업비 : 연 146만원으로 산정

- 대학생 평균등록금 667만원과 다자녀가정 장학금(기초 ~ 소득 : 3분위 520만원,
소득4분위 ~ 소득8분위 : 450만원) 평균 차액의 50%인 91만원과 안산인재육성재단
2019년 장학금 최고액 200만원의 평균값인 146만원 적용

* 산식 : $((667\text{만원} - 485\text{만원}) / 2 + 200\text{만원}) / 2 = 146\text{만원}$

▷ 2021년 ~ 2023년 지원사업비 : 연 165만원으로 산정

- 대학생 평균등록금 667만원과 평균장학금 338만원의 차액의 50%인 165만원 적용
(대학알리미 참조 : 교육부)

* 산식 : $((667\text{만원} - 338\text{만원}) / 50\%) = 165\text{만원}$

다. 재원조달 : 전출금 혹은 사회보장적수혜금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2,880	7,083	21,923	31,996	31,516	95,398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2,880	7,083	21,923	31,996	31,516	95,398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880	7,083	21,923	31,996	31,516
	지방세	2,880	7,083	21,923	31,996	31,51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163호
----------	---------

제안년월일 : 2019. 10. 25.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 수정이유

-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 변경
- 사업목적 및 사업명 변경 사항 수정반영 (안 제1조~제8조, 제10조~제11조, 별지 제1호 및 제3호)
- 거주기간 등 지원대상 요건 수정 보완 및 지원대상 단계별 확대 시행 시 의회 동의사항 신설 (안 제4조)
- 학사과정 졸업 후 재진학에 따른 미지급 사유 명확화(안 제5조)
- 적용례를 통해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함 (안 부칙 제2조)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안” 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를 “지역 사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로, “반값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직접부담 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반값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으로, “제3호에 따른 직접부담” 을 “제4호에 따른 본인부담” 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반값등록금의 지원 등)”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반값등록금” 을 각각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으로 하고, 제2항 중 “매년” 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반값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으로, “1년” 을 “3년” 으로, “두고 있는 대상 학생으로” 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 학생

2. 가족관계등록부상 가구원이 없는 대상 학생

② 제1항의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반값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다자녀가정 학생은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한다.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있다” 를 “있으며, 지원 대상을 변경(단계별 확대)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값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않는다.” 를 “않는다.(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에 재 진학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로 한다.

제6조 중 “반값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반값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값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반값등록금” 을 각각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반값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업무가 위탁되는 경우 신청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 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값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으로, “반값등록금을”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을”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반값등록금” 을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 으로 한다.

부칙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시행일)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2.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0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	(남, 여)
학교명		전공			
주소					
건강보험	① 지역건강보험() ② 직장건강보험 / 교육비 지원 여부(지원, 미지원)				

학자금 지급 통장(보호자 및 대상자의 개인통장)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신청인 가족 사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한국어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의 건강보험공단 자격조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 재학 확인
	② 수집 · 이용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학생 가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직업, 직장명)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학자금 지원 기간(학교 재학 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안산시
	※ 동의 거부 시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 후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별지 제3호서식]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검토서 (제8조제2항 관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안산시 대학생 <u>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u>	안산시 대학생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안</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u>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u> 안산시 대학생 <u>반값등록금</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u> ----- ----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직접부담 등록금"이란 대상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제5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반값등록금"이란 제3호에 따른 직접 부담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원안과 같음) 4. " <u>본인부담 등록금</u> "----- ----- -----. 5. "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 제4호에 따른 <u>본인부담</u> ----- -----.
제3조(<u>반값등록금의 지원 등</u>) ① 안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u>반값등록금</u>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u>반값등록금 지원</u> 에 관한 기본계획을 <u>매년</u>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조(<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등</u>) ① ----- -----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②---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 <u>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u> ----- <u>하여 매년</u> -----. ③ (원안과 같음)

원 안	수정안
<p>제4조(지원 대상) ① <u>반값등록금 지원 대상</u>은 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u>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 학생으로</u>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u>반값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자녀가정 학생, 장애인 학생,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 한다.</u></p> <p>③ <u>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다.</u></p> <p>제5조(지원 금액 등) ① <u>반값등록금은 등록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u></p> <p>② ~ ③ (생략)</p> <p>④ <u>학사과정 졸업 후(본 조례를 통해 지원</u></p>	<p>제4조(지원 대상) ①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u>3년</u> ----- <u>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u> --</p> <p>1. <u>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 학생</u></p> <p>2. <u>가족관계등록부상 가구원이 없는 대상 학생</u></p> <p>② <u>제1항의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u></p> <p>③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 <u>단, 다자녀가정 학생은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한다.</u></p> <p>④ ----- ----- <u>있으며, 지원 대상을 변경(단계별 확대)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제5조(지원 금액 등) ①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② ~ ③ (원안과 같음) ④ -----</p>

원 안	수정안
<p>받지 않은 졸업생을 포함한다) 동급 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u>않는다.</u></p>	<p>----- ----- <u>않는다.</u> <u>(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에 재 진학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u></p>
<p>제6조(신청인) <u>반값등록금</u>을 지원 받으려는 대상 학생 또는 그 대상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6조(신청인)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 ----- ----- -----.</p>
<p>제7조(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u>반값등록금</u> 지원신청서 3. ~ 6. (생 략) <p>② (생 략)</p> <p>③ 신청인은 <u>반값등록금</u> 신청일 이후 지급일까지 주소, 법정대리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같음) 2. -----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3. ~ 6. (원안과 같음) <p>② (원안과 같음)</p> <p>③ -----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u> ----- ----- ----- -----.</p>
<p>제8조(지원 절차) ① 동장은 별지 제1호</p>	<p>제8조(지원 절차) ①-----</p>

원 안	수정안
<p>서식에 따른 <u>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u>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동장은 해당 학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u>반값등록금 지원검토서</u>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u>반값등록금 지원검토서</u>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금액을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p>	<p>--<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 -----.</p> <p>② ----- ----- -----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p> <p>③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 -----.</p>
제10조(업무 위탁) 시장은 <u>반값등록금 지원</u> 에 관한 사업을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 위탁) ①--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 ----- ----- -----.
<u><신 설></u>	② 업무가 위탁되는 경우 신청은 (재)안산 인재육성재단에 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u>반값등록금</u> 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u>반값등록금</u> 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u> -- ----- --- <u>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u> -- -----.

원 안	수정안
1. ~ 2. (생 략)	1. ~ 2. (원안과 같음)
3. 제5조에 따라 산정된 <u>반값등록금</u> 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3. ----- <u>본인부담 등록금 반</u> <u>값 지원금-----</u>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1.(시행일)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 행한다.</p> <p>2.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적용 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0학년 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 용한다.</p>

월 안

[별지] 제1호서식]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클럽 지워검토서 (제8조 제2항 관련)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검토서 (제8조 제2항 관련)